

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8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2월 20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이를 목적에 맞게 “소유자”를 “승용차요일제 참여 시설물 소유자”로 수정하여 차량 소유자로의 혼동을 피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안 제9조제1항 중 “가입자 또는 소유자에게”를 “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또는 참여 시설 소유자에게”로 함(안 제9조제1항).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1항 중 “가입자 또는 소유자에게”를 “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또는 참여 시설 소유자에게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승용차마일리지”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감축할 경우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-----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5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차량은 서울특별시</u> <u>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</u> <u>이하 승용차(렌터카 포함)로</u> <u>한다. 다만, 승용차마일리지</u> <u>제와 관련해서는 렌터카를</u> <u>제외한다.</u></p>	<p><u>제5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서</u> <u>적용하는 차량은 서울특별시</u> <u>에 등록된 비사업용 10인승</u> <u>이하 승용차(렌터카 포함)로</u> <u>한다. 다만, 승용차마일리지</u> <u>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</u> <u>승합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</u> <u>으며, 렌터카는 제외한다.</u></p>	<p>제5조(적용대상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8조(참여신청) ① <u>승용차</u> <u>요일제 참여는 승용차요일제</u> <u>홈페이지나 자치구 담당부서,</u> <u>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참여신청) ① <u>승용차</u> <u>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</u> <u>참여는 홈페이지나 -----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8조(참여신청) ① (개정안 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혜택)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<u>가입자에게</u>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~30% 할인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교통유발부담금 20% 감면</u></p> <p>5. ~ 6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10조(이행기준) 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제11조(이행실태 점검) 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9조(혜택) ① ----- ----- ----- <u>가입자 또는 소유자에게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% 할인(단,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한다. 자치구는 30%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할인을 정할 수 있다.)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% 감면</u>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이행기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u></p> <p>제11조(이행실태 점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설물의 이행실태 점검은 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다.</u></p>	<p>제9조(혜택) ① ----- ----- ----- <u>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또는 참여 시설 소유자에게</u> ----- -----.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~ 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0조(이행기준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1조(이행실태 점검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								
<p>제13조(탈퇴 신청 등) 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제13조(탈퇴 신청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 중 고의·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여자는 탈퇴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3조(탈퇴 신청 등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								
<p>제15조(승용차마일리지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제15조(승용차마일리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·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5조(승용차마일리지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								
<p>제16조(포상) ① 시장은 <u>승용차요일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, 단체 및 공무원</u>을 포상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제16조(포상) ① 시장은 <u>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, 단체 및 공무원</u>을 포상할 수 있다.</p> <p>[별표 1] <u>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기준 (제10조제3항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95 1771 1011 1935"> <thead> <tr> <th>프로그</th> <th>대상</th> <th>이행기준</th> <th>최대 감면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승용차부제</td> <td>요일제 중시자 이용자</td> <td>요일제 전자스타카(RFD)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차차량의 운행 제한 단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</td> <td>이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프로그	대상	이행기준	최대 감면비율	승용차부제	요일제 중시자 이용자	요일제 전자스타카(RFD)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차차량의 운행 제한 단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	이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	<p>제16조(포상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[별표 1] <u>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기준 (제10조제3항 관련)</u> (개정안과 같음)</p>
프로그	대상	이행기준	최대 감면비율							
승용차부제	요일제 중시자 이용자	요일제 전자스타카(RFD)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차차량의 운행 제한 단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	이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							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”를 “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(렌터카 포함)로 한다. 다만, 승용차마일리지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으며, 렌터카는 제외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승용차요일제 참여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나”를 “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는 홈페이지나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가입자에게”를 “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또는 참여 시설 소유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% 할인(단,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한다. 자치구는 30%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.)
4.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% 감면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설물의 이행실태 점검은 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다.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 중 고의·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여자는 탈퇴 처리할 수 있다.

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·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승용차요일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”을 “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”으로 한다.

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[별표 1]

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 기준(제10조제3항 관련)

프로그램		대상	이행기준	최대경감비율
승용차부제	요일제	종사자 이용자	○ 요일제 전자스티커(RFID)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부착차량의 운행 제한 단,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	○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승용차마일리지”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감축할 경우 <u>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</u>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</u>-----.</p>
<p><u>제5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(렌터카 포함)로 한다. 다만, 승용차마일리지제와 관련하여 렌터카를 제외한다.</u></p>	<p><u>제5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(렌터카 포함)로 한다. 다만, 승용차마일리지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으며, 렌터카는 제외한다.</u></p>
<p>제8조(참여신청) ① <u>승용차요일제 참여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나 자치구 담당부서, 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참여신청) ① <u>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는 홈페이지나 ----- -----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혜택)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<u>가입자에게</u>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혜택) ① ----- ----- <u>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또는 참여 시설 소유자에게</u>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<u>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~30% 할인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교통유발부담금 20% 감면</u></p> <p>5. ~ 6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10조(이행기준) 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>제11조(이행실태 점검) 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>제13조(탈퇴 신청 등) 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1. <u>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% 할인</u> (단,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한다. 자치구는 30%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.)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% 감면</u>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이행기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u></p> <p>제11조(이행실태 점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설물의 이행실태 점검은 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다.</u></p> <p>제13조(탈퇴 신청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 중 고의·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여자는 탈퇴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<p>제15조(승용차마일리지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p>제16조(포상) ① 시장은 <u>승용차요일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, 단체 및 공무원</u>을 포상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제15조(승용차마일리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장은 <u>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·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</u>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포상) ① 시장은 <u>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, 단체 및 공무원</u>을 포상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〔별표 1〕</p> <p><u>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기준(제10조제3항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10 1205 1428 1440"> <thead> <tr> <th>프로그램</th> <th>대상</th> <th>이행기준</th> <th>최대감면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승용차부제</td> <td>요일제 종사자 이용자</td> <td>○요일제 전자스티커(RFID)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 제한 단,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</td> <td>○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프로그램	대상	이행기준	최대감면비율	승용차부제	요일제 종사자 이용자	○요일제 전자스티커(RFID)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 제한 단,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	○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
프로그램	대상	이행기준	최대감면비율						
승용차부제	요일제 종사자 이용자	○요일제 전자스티커(RFID)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 제한 단,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	○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						